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판 중 법정 등 모욕죄 신설〉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5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가. 법정 등 모욕죄 일반론 및 외국 입법례	2
나.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9. 1.
3. 회 부 일: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없더라도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현행	개정안
第138條(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생략)	第138條(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재판 중인 법정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자 또는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자도 제1항1)의 형과 같다</u>

이는 재판 중인 법정 안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모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법원의 재판과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없더라도 재판 중인 법정 안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의 소동·모욕행위를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처벌하여 법정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

1)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일반론 및 외국 입법례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당시 그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위 각 기능의 중요성 및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²⁾

한편, 「국회법」³⁾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례

3)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거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금)와 국회모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회의회의장에서의 폭행·협박 등의 방해 행위와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반면,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⁶⁾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⁷⁾를 법률상의 범죄가 아닌 의회특권에 의하여 의회모독으로 징벌하나,⁸⁾ 그 처벌 수준은 매우 약함.⁹⁾ 영국의 법정모독죄는 주로 관습법(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1981년 법정모독법(Contempt of

5)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6) 참고로,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61호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7) 양원 중 어느 한 곳의 기능 수행이나 의원·직원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그러한 방해할 의도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언어 포함)가 ‘의회모독’에 포함되며, 의회나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의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방해, 위협하는 행위 등이 그 예시로 설명된다.[의회특권 공동위원회 첫 번째 보고서(1999), 제6장 징계 및 징벌 권한, par. 264(<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199899/jtsselect/jtpriv/43/4310.htm>)]

8) 의회특권 공동위원회 보고서(2013), 3. 의회의 처벌 권한, par. 6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314/jtselect/jtpriv/30/3005.htm>)

9) 대체 처벌로는 공식적인 훈계(admonishment)나 질책(reprimand)이 있다. 하원의 벌금 부과 권한은 18세기에 법원에 의해 그 권한이 문제시되었고, 현재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고, 상원은 여전히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의회특권 공동위원회 첫 번째 보고서(1999), 제6장 징계 및 징벌 권한, par. 272(<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199899/jtselect/jtpriv/43/4310.htm>)]

Court Act 1981)에 성문화됨.¹⁰⁾

미국은 의회에 대한 증언 또는 서류 제출 거부행위를 연방의회법에서 경범죄로 처벌하고,¹¹⁾ 연방형법에서 법원의 권위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함.

독일은 입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별도로 처벌하나,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프랑스, 일본은 우리의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정·국회회의장 모욕 관련 외국 입법례>

국가	외국 입법례
독일 형법	제106조b(입법기관 활동의 방해)①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이 입법기관의 건물 또는 그 부속 부동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정한 일반적·개별적 명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u>입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방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연방하원 의원, 연방상원 의원, 연방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주입법기관 구성원이나 주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정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프랑스	제434-12조(유책증언거부) 중죄나 경죄의 범인을 알고 있다고 공연히 밝힌 자

10)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Chief Coroner's Guidance for Coroners on the Bench, Chapter 10. Contempt of Court, par. 1(<https://www.judiciary.uk/guidance-and-resources/contempt-of-court/>)

11) 최정인, 미국 의회 증인출석요구 및 불출석 제재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84호, 국회 입법조사처, 2쪽

형법	가 그 점에 대한 <u>법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u>
영국 법정모 독법	제1조(엄격책임 원칙) 이 법에서 “엄격책임 원칙”이란 특정 행위가 특정 법적 절차에서 사법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모독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2조(치안판사 법정에서의 법정모독죄) (1) 치안판사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이 조항에 따라 처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재판 중 또는 법정 출석·퇴정 시에 판사(들), 법정에 출석한 증인, 법정 직원, 또는 법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u>고의로 모욕하는 경우</u> (b) <u>법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u> (2) 이러한 경우 법정은 법정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해당 위반자를 구금하여 법정이 폐정될 때까지 억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법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반자를 <u>최대 1개월 동안 구금하거나,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u> (2A) ~ (5) (생략) 제14조(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절차) (1) 법원은 법정모독죄로 사람을 구금할 권한을 가지며, (이 조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금은 고정된 기간이어야 하며(법원이 조기 석방을 명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그 기간은 상급법원에 의한 구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하급법원에 의한 구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하급법원은 법정모독죄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이 조항을 제외하고) 그 벌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2,500을 초과할 수 없다. (2A) ~ (5) (생략)
미국 연방법	제2편 의회 제192조(증인의 증언 또는 서류 제출 거부) 각 원, 양원의 합동결의나 공동결의로 설치된 합동위원회, 각 원의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문제에 관해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증인으로 어느 원의 기관에 의해 소환되어, <u>고의로 결석하거나, 출석해서, 조사 중인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0 이상 \$1,000 이하의 벌금과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u>

제18편 범죄와 형사절차
제401조(법원의 권한) 미합중국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로써 <u>그 권위를 모욕하는 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권한</u> 이 있다.
1. 법정에 출석하여 또는 법정 근처에서 <u>사법행정을 방해할 정도의 부정행위</u>
2. 법원공무원의 <u>공무 집행상의 부정행위</u>
3. 법원의 적법한 영장, 소송절차, 지시,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u>불복종 또는 저항</u>

현행 「형법」의 규정과 외국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i) 현행 「형법」상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는 외국 입법례보다 법정형이 높은 반면, ii) 범죄 구성요건의 경우, 현행 「형법」상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가 ① 재판 또는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을 요구하고, 그 행위 태양을 모욕 또는 소동으로 한정하는 반면, ② 외국의 입법례는 목적의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입법활동 방해·교란(독일), 증언 거부(프랑스), 모욕·절차방해·부정행위(미국), 부정행위·불복종·저항(영국)과 같이 포괄적임.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과 국회의 공정한 심의 기능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동이나 모욕¹²⁾¹³⁾으로 그 재판 및 심의가 방

12) <최근 5년간법정·국회회의장모욕 및 국회법위반 사건 발생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국회회의장모욕	24건	1건	4건	6건	8건
국회법 위반	10건	0건	1건	0건	1건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는 점과 ②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재판 및 심의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

현행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 또는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¹⁴⁾ ‘재판 및 심의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구성요건에 포함하지 않고, 소동 또는 모욕만을 구성요건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 및 심의기능의 보호를 초과하여 법원이나 국회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등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특히, ‘모욕’을 구성요건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등의 행위를 처벌하던 국가모독등의 죄(종전 제104조의2¹⁵⁾)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13) <최근 10년간 법정 내 욕설·난동 사건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6	19	24	36	46	42	33	21	14	40

*자료: 전문식·김성화·이단비·양승욱,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67쪽

1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례 참조

15) 구 「형법」(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배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결정¹⁶⁾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에서 재판 및 심의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구성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¹⁷⁾나 「경범죄 처벌법」¹⁸⁾상 경범죄에 불과한 소동행위가 법정·국회회의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장소적 이유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점에서, 법정·국회회의장에서의 장소적 요건이 단순 모욕죄 및 경범죄와 비교하여 가중적 불법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형법」상의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와 별개로, 국회의 심의기능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회법」¹⁹⁾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²⁰⁾에서 폭력행위,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6)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17)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19. (생략)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 41. (생략)

②·③ (생략)

19) 각주 3 참조

20) 각주 4 참조

집행 방해행위 및 모욕적 언동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법정에서의 폭언, 소란 등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및 현행법 유사 범죄 비교>

구분	개정안	「국회법」	국회증언 감정법	「법원조직법」
구성 요건	재판 중인 <u>법정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자 또는 회의 중인 국회의원회의장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자</u>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u>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u> 이러한 행위로 <u>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u>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법정 내외에서 질서유지 명령, 녹화 등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프랑스, 일본과 같이 별도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거나,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모욕하는 행위를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처벌함으로써 재판 기능 및 국회 심의 기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재판 및 심의 기능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소동 또는 모욕만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과 장소적 이유만으로 소동·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국회의 심의기능 및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형법」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56